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2000. 12. 21.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 조항의 정비와 신평레포츠공원 이용 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신평레포츠시설 사용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안 제9조 내지 제10조)
- 나. 신평레포츠시설 사용과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사용 종료 후에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을 “사용신고”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승인 신청시”를 “사용신고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사용승인”을 “사용신고”로 하며, 동조 본문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승인)①신평레포츠공원 체육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제1항의 <u>승인신청시</u>에는 그 사용기간, 행사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사용신고)①----- ----- -----<u>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u>사용신고시</u>----- -----.</p>
<p>제10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될 때에는 <u>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한다.</u></p> <p>1. ~ 6 (생략)</p>	<p>제10조(사용신고의 우선순위)----- ----- -----<u>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u> 1. ~ 6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u>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u>모두 사용자부담으로 한다.</u></p> <p>③사용자는 <u>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u>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u>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u></p>	<p>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u>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u>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u></p> <p>②(생략)</p>	<p>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u>체육시설을 사용하는자</u>----- ----- ----- ----- -----.</p> <p>②(현행과 같음)</p>